

안전공급계약제에 따른 협회의견

(2001.3)

● 한국LPG가스공업협회 ●

〈안전공급계약제 주요내용〉

- 안전공급계약 체결 : LPG판매자가 20·50kg 등의 용기를 가지고 LPG를 판매할 때에는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 체결
- 용기 등 공급설비의 소유·관리 : 판매사업자는 용기 등 공급설비를 직접 소유·관리
- 소비자보장보험 가입 :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피해보상보험에 가입
- 시범지역내 가스판매(구역판매제) : 시범지역내 소비자에 대한 가스공급(안전공급계약)은 시범지역내 판매사업자에 한함
- 기타 : 6개월 시범실시후 전국 확대실시 여부 결정

□ 계열화 문제

- 안전공급계약제는 판매자와 소비자간 계약을 통한 고정거래제 즉 계열화를 전제로 하는바,
- 판매소와 소비자간 계열화가 고정거래를 통한 안전관리 향상의 효과도 일부 있으나, 독과점의 폐해도 크게 우려됨
- 특히 판매소가 소비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충전소와의 거래관계상 우월적지위를 얻게되어 충전소가 위축되고 있음
- 따라서 충전소와 판매소간에도 공급계약을 통한 계열화가 요망됨
- (에너지안전과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 업계의 협조관계 조성을 강조하나, 제도화는 어렵다는 입장인바 제도화없이 구두로만 권장해서는 시행되기 어려움)

□ 용기관리문제

- 현재 용기소유는 소비자, 용기관리는 충전소가 담당하고 있으나 안전공급 계약제에서는 판매소의 소유 및 관리를 명시하고 있음
 - 그러나 현재 시범지역에서 판매소가 관리하는 경우는 없음
 - 용기관리비 추정 (2000년 기준)

재 검사비: 410만개 × 7,000원 = 287억원
폐용기개체비: 17만개 × 25,000원 = 43억원
계 330억원

- 현실상 판매소는 용기관리할 능력이 없음

- 따라서 판매업계 내부에서조차 용기관리 거부 움직임이 있으며, 일부에서는 용기관리비를 별도 책정하여 원천징수해주면 용기관리 하겠다고 주장

- 그러나 가격자유화 상태에서 정부가 용기관리비를 책정·원천징수해 주기는 어려울 것임

- 따라서 용기관리는 시장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

- 즉 충전소가 용기관리할 때의 LPG가격과 안할 때의 가격으로 이원화하면 시장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주체가 정해질 것임

□ 구역판매제 문제

- 허가권역내 판매라는 구역판매제는 당초부터 논란이 있었던 문제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임

- 다만, 6개월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인 만큼 전국 확대 시행시에는 삭제되어야 할 것임

□ 충전소의 소매기능 문제

- 충전소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하여

- 가스산업과는 충전소의 소매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 (2000.12.30, 2001.2.12)이나

- 에너지안전과는 판매소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
- 이점에 대한 법적근거를 보면
 - LPG법 제9조①에서 “충전사업자·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가 LPG를 수요자(사업자 등을 제외)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……”라 규정하여 충전사업자도 판매사업자와 동일하게 공급자의무를 이행할 경우 수요자에 대한 가스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
 - 다만, 에너지안전과에서는 안전공급계약 시범실시 특례기준(산자부고시 제2000-144호) 제7조의 “시범지역내에 있는 소비자에 대한 가스공급은 시범지역내의 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에 한해 할 수 있다”는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 같음
- 그러나 동 고시는 상위법인 LPG법에 위배될 수 없으며 동 고시 제2조의 적용범위가 판매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충전사업자는 동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스산업과의 법해석이 옳다고 판단됨
- 특히 유통단계축소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할수 있다는 경제논리상으로도 충전소의 소매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- 또한편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충전소가 안전관리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음